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69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박지원 · 이개호 · 소병훈
김성희 · 김종민 · 김 윤
전은수 · 권향엽 · 박해철
장종태 · 채현일 · 김준환
박균택 · 권칠승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 이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 과정에서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결과 같은 취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같은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② (생략)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 조치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u><신 설></u>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경우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 ----- -----제6항----- ----- -----. ⑧ 제6항----- -----.
--	--